

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49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11. 8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태화강 자전거 도로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입한 전동차를 관광객 이동 및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관리자, 이용료의 납부, 이용료의 면제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- 다. 운행구간, 운행시간, 휴무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
- 라. 탑승안전 및 보험가입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3. 근거법규

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, 제5조

4. 조례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2019년 당초예산 반영, 비용추계서 반영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개선의견 반영
 - ※ 제6조 이용료의 면제 대상 범위 확대
- 라. 입법예고: 2018. 9. 10. ~ 10. 1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태화강변 전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태화강변 전동차(이하 “전동차”라 한다)라 함은 전동기를 장착하여 전기를 동력원으로 운행하는 차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전동차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태화강변 전동차 운행 및 안전관리
2. 태화강변 관광객 유치 촉진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전동차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관리자) ① 구청장은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·운행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,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,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업무담당이 이를 대행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이용료의 납부) 전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별지 서식에 따른 탑승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.

제6조(이용료의 면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동차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3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4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(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5.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, 만65세 이상 노인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운행구간) 전동차의 운행구간은 태화강지방정원 내로 한정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.

제8조(운행시간) ① 전동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비수기(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): 9시부터 18시까지
 2. 성수기(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): 9시부터 20시까지
-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하며 구청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행시간, 이용료,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휴무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.

1. 설날 및 추석
2.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
3. 그 밖에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경우

제10조(탑승안전) 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객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탑승안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11조(보험가입) 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,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

전동차 이용료
(제5조 관련)

종 별	기 준	이 용 료	비 고
전동차(8인승이상)	1회	개인당 1,000원	

【별지 서식】

전동차 탑승권
(제5조 관련)

(앞면)

	탑 승 권 원 부	탑 승 권 (검표용)	영 수 증
편 철 부 분	일련번호: 요금: 원 ()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	일련번호: 요금: 원 ()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	일련번호: 요금: 원 ()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(뒷면)

	탑승자 준수사항	운행구간 안내
편 철 부 분		※ 탑승권은 당일에만 유효함

- ※ 본 탑승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도안을 달리할 수 있다.
- ※ 여러 사람이나 단체 탑승권은 탑승권 1매로 발행할 수 있다.

근 거 법 규

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」

제4조(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관광객 유치 촉진
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 제작 및 홍보
3.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
4.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
5.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
6.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
7.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)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·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여가(활동)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
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의 개발·제작·배포 등에 관한 사업
3.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
4.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				
관리번호	2018A울산중구043			
정책명	울산광역시중구 태화강변 전동차운영및 관리에 관한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울산광역시 중구		
	부서명	건설과		
	담당자명	김윤철	전화번호	052-290-3824
성별영향평가가서 제출날짜	2018년 9월 19일	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건설과)	<p>본 조례 '울산광역시중구 태화강변 전동차운영및 관리에 관한 조례'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,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.</p> <p>제정의 주요내용은 1. 제정목적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, 2. 구청장의 책무및 관리자(안 제3조~제4조), 3. 이용료의 납부및 면제(안 제5조~제6조), 4. 운행구간, 운행시간및 후무(안 제7조~제9호), 5. 탑승안전및 보험가입(안 제10조~제11조) 등에 대한 내용임.</p>	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	
	제6조 이용료의 면제에 있어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만 65세 이상 노인,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.			
	구분	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	검토 사유
1	제6조(이용료의 면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동차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----- 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8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10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1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12. 만 65세 이상 노인 13.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		

		1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2018년 10월 10일 까지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>2018년 10월 05일</p> <p>울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(담당자/연락번호 : 류지숙/052-290-4903)</p> <p>건설과장 귀하</p>			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합계
시비	-	-	-	-	-	-
구비	30,800	30,800	30,800	30,800	30,800	154,000
합계	30,800	30,800	30,800	30,800	30,800	154,000

1. 부대의견: 없음
2. 협의사항: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
3. 작성자: 건설과 지방공업주사보 김윤철(290-3824)